

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15일
신청인	성명	생년월일(외국인등록번호)	
	주소		
포획장소			
야생동물별 포획신청량		포획기간	
총기의 종류		수렵장사용료	

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라 위 수렵장의 수렵야생동물을 포획하려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신청인(대표자) 제출 서류	1. 수렵면허증 사본 1부 2.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1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증명서 1부 ※ 참고사항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제1항에 따른 수렵장사용료는 수렵동물 확인표지 수령시 납부하여야 합니다.	수수료 없음
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

처리절차

